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8. 18 선고 2022가단10727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기술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
담당변호사 김수정, 임호택

피 고 A
변 론 종 결 무변론
판 결 선 고 2022. 8. 1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20. 5. 20.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B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20. 5. 22. 접수 제18590호로 마친
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

그 의무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되어야 하고 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상속인이 되어야 할 것인바,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주문 제1.의 나.항 기재 각 말소등기청구의 이행상대방으로 채무자인 소외 B를 기재하였는데, 소장 청구취지 및 원인의 기재에 의하면, 위 B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, 말소등기의 상대방은 위 B의 상속인이 되어야 하나, 권리의 이전이 아닌 말소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상속인을 특정하여 권리관계의 표시를 보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, 이를 그대로 기재한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태환

별지